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기금설
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6. 2.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5월 17일 영등포구청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3년 5월 17일
- 다. 상정일자 : 1993년 6월 1일
(제17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市民局長 李彰熙)

- 가. 제안이유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구 자립여건 조성
 - 지역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동기부여
 -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산업의 균형 발전 도모
 -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영등포구의 출연금, 기금으로 생기는 수입(안 제3조)
 - 용자 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안 제6조)
 - 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등(안 제4조)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 姜性熙)

- 가. '93. 5. 永登浦區廳長이 制定要請한 서울特別市永登浦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 및 運用條例(案)의 內容을 檢討한 바 政府가 新韓國經濟發展 計劃의 一環으로 實施하는 中小企業의 育成發展을 위한 資金支援을 위하여 自治區別로 中小企業育成基金을 造成하여 支援對象企業을 選定支援함으로써 地域經濟成長과 地域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法 제7조 및 地方自治法 제133조의 規定에 依據 同 育成 基金의 運用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條例로 制定하고자 하는 것

으로

나. 다음 사항에 대한 充分한 檢討를 거쳐 適切한 措置를 取할 것을 前提로 同條例(案)은 要請案 대로 制定함이 可하다고 思料됩니다.

1) 제6조의 規定에 依한 基金運用委員會(8人以下)를 構成할 때는 區議員을 參與토록 하여 支援對象企業의 選定 및 支援額 決定의 適正을 圖謀하는 方案 강구가 要望됨.

2)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規程에 依하면 支援對象企業의 選定基準 및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償還條件等은 規則으로 定하도록 委任하고 있는 바 規則制定時는 基金運用의 적정을 위하여 基金運用委員會의 嚴正한 審議를 거쳐 그 內容은 具體的이고도 合理的으로 定할것이며 可能한 限 執行機關의 裁量권을 排除토록 함이 要望됨.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
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67
----------	-----

제출년월일 : 1993. 5. 1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구 자립 여건 조성
- 지역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의 동기 부여
-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산업의 균형 발전 도모
-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영등포구의 출연금, 기금으로 생기는 수입(안 제3조)
- 용자 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안 제6조)
- 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등(안 제4조)

3. 참고사항 :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
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3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등의 수익금
3. 기타 영등포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 4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출납명령판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명령판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자대상자의 선정
2. 용자액의 결정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과장이 서기는 상공계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용자의 절차·용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6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 8 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용자의 사용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 10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中小企業 基本法(第7條)

第7條(地方自治團體의 施策)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에 關한 國家施策에 準하여 필요한 施策을 請究하여야 한다.

○地方自治法(第133條)

第133條(財産및基金의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施行目的의 達成을 爲하여 또는 公益上 必要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資金을 積立하거나 또는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資金의 積立 및 基金의 設置·運用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이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5. 27.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3년 5월 1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7회 영등포구의회(임사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최(1993년 5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가. 제안이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93. 1. 1 부과분부터 적용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 사용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주차장 시설과 관계없는 일반예산으로 집행하여 오던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이 혼합 편성되어 현계업무 처리혼란 및 체납액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체납액에 대한 세입소관을 일원화하여 세입사

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부칙 제3항(경과조치)으로 신설함.

가.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 결정분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안 부칙 제3조 제1호)

나. 1992년도 징수결정분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안 부칙 제3조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서울特別市永登浦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을 檢討한 바, 1992年 10月 29日 永登浦區 駐車場特別會計稅入을 1993年 1月 1日부터 適用하도록 條例를 制定하였으나 過年度分에 대하여는 一般會計 稅入으로 편성되어 駐車場設置目的과는 다른 一般豫算으로 執行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附則 제3항, 1호, 2호를 新設하여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과년도 滯納額 整理分에 대하여 特別會計, 歲入 施行日字를 定하여 處理하므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의 혼동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滯納額에 대한 稅入所管을 一元化할 수 있으며 또한 特別會計 稅入이 增額되므로 駐車場施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